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점검이 어려운 경우 조사·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조사·점검 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기타 정상적인 조사·점검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점검 주기 조정(안 제25조제2항)
- 나. 수출용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을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2.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상적인 조사·점검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 라목 중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를 “위반사항에”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생산·가공· 출하·운반의 중지 명령 또는 생산·가공시 설 등의 개선·보수 명령	등록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조사·점검의 주기) 법 제 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 시설등에 대한 조사·점검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u>다만, 위생관리기준에 맞추거나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점검 주기는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u> <u><신 설></u>	제25조(조사·점검의 주기) ① -- ----- ----- -----. <u><단서 삭제></u>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u>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u> 2. <u>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상적인 조사·점검이 어렵다고 인정하는</u>

[별표 2]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u>법 제6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u>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u>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 또는 생산·가공 시설 등의 개선·보수 명령</u>	<u>등록취소</u>	
1) <u>위생관리기준에 중대하게 미달되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수준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 또는 생산·가공 시설 등의 개선·보수 명령</u>	<u>등록취소</u>	
2) <u>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수준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 명령 또는 생산·가공 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u>	<u>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 명령</u>	<u>등록취소</u>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9조제1 항에 따른 위 생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 조 제1항 제2호	<u>생산·가 공·출하 ·운반의 중지 명령 또는 생산·가 공시설 등의 개선·보 수 명령</u>	<u>등록취소</u>	
1)~2)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618